

기술 용역 계약서

계약번호 제 2013-162호

공고번호 제 - 호

계약자	발 주 자	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
	계 약 상 대 자	(주)아워브레인
계약내용	용 역 명	시설물 안전점검 용역
	계 약 금 액	일금일십삼억오천만원정(₩1,350,000,000), V.A.T별도
	총용역부기금액	일금일십사억팔천오백만원정(₩1,485,000,000), V.A.T포함
	계 약 보 증 금	일금일억사천팔백오십만원정(₩148,500,000)
	지 체 상 금 율	매1일당 용역비의 1,000분의3 해당금액
	계 약 기 간	2013. 09 ~ 2013. 12
	기 타 사 항	

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와 (주)아워브레인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기술용역에 대한 '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3. 09. 06.

발 주 자 : 신 대구 부 산 고 속 도 로 주식회사

대 표 이 사 장 동 규



계약상대자 : (주) 아 워 브 레 인

대 표 이 사 김 정 호



기술용역계약서

계약번호 제 2013-162호

공고번호 제 - 호

계약자	발 주 자	신대구부산고속도로주식회사
	계 약 상 대 자	(주)아워브레인
계약내용	용 역 명	시설물 안전점검 용역(정밀1회, 정기3회)
	계 약 금 액	일금일십삼억오천만원정(₩1,350,000,000), V.A.T별도
	총용역부기금액	일금일십사억팔천오백만원정(₩1,485,000,000), V.A.T포함
	계 약 보 증 금	일금일억사천팔백오십만원정(₩148,500,000)
	지 체 상 금 율	매1일당 용역비의 1,000분의3 해당금액
	계 약 기 간	2013. 09 ~ 2015. 06
	기 타 사 항	정밀점검 1회 : '13년(下), 정기점검 3회 : '14년(上)·(下)·'15년(上)

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와 (주)아워브레인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기술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,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3. 09. 06.

발 주 자 : 신 대구 부 산 고 속 도 로 주 식 회 사

대 표 이 사 장 동 규

계약상대자 : (주) 아 워 브 레 인

대 표 이 사 김 정 호



“을” 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“갑”에게 귀속되며, “갑”은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 그러나, 이로 인해 “갑”의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본 계약에 의한 제반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② “을” 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“을”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.

제4조 (계약이행상의 감독)

“갑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술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.

제5조 (용역의 대상)

“갑”과 “을” 간의 계약에 따라 “을”이 수행할 용역명 및 용역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대구-부산간고속도로 노선에 시공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.

1. 용역명 : 대구-부산간고속도로 시설물 안전점검(정밀1회, 정기3회)
2. 용역내용 및 범위 : 과업지시서 참조

제6조 (계약금액)

“을”이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“갑”이 지급하는 계약금액은 일금일십삼억오천만원(₩1,350,000,000/부가세 별도)으로 한다.

제7조 (계약금액의 청구 및 지급)

“갑”은 “을”에게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계약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.

1. 착수금(30%) : 일금사억오백만원(₩405,000,000/ 부가세 별도)
 - “을”은 계약 체결 후 14영업일 이내에 “갑”에게 청구
 - “을”의 청구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지급
2. 중도금(25%) : 일금삼억삼천칠백오십만원(₩337,500,000/ 부가세 별도)
 - “을”은 “갑”에게 최종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검수를 요청
 - “갑”은 검수를 완료시 “을”에게 결과 통지
 - 검수완료 후 14영업일 이내에 “을”을 “갑”에게 중도금 지급을 청구
 - “을”의 청구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지급

3. 잔 금(45%) : 일금육억칠백오십만원(₩607,500,000/ 부가세 별도)

* 각 정기점검 용역 종료 후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지급

가. '14년 상반기 준공금 : 일금이억이백오십만원(₩202,500,000/ 부가세 별도)

나. '14년 하반기 준공금 : 일금이억이백오십만원(₩202,500,000/ 부가세 별도)

다. '15년 상반기 준공금 : 일금이억이백오십만원(₩202,500,000/ 부가세 별도)

(준공금 신청)

- “을” 은 “갑” 에게 최종보고서(최종성과품) 제출과 동시에 검수를 요청
- “갑” 은 검수 완료시 “을” 에게 결과 통지
- 검수 완료 후 14영업일 이내에 “을” 은 “갑” 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
- “을” 의 청구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지급

제8조 (계약기간)

1. 계약기간 : 2013. 09. 06. ~ 2015. 06. 30.

2.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상호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① 천재지변, 전쟁, 사변, 소요, 폭동 기타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② “갑” 이 계획을 변경하였거나 또는 관계법규가 개정되었을 경우



제9조 (용역내용의 변경)

1. “갑” 의 사정에 따라 용역내용의 변경을 “을” 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“을”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2. 제1항에 따른 비용 중 경미한 것은 “을” 이 부담하며, 중요한 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,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“갑” 의 결정에 따른다.

제10조 (기술용역의 착수 및 보고)

1. “을” 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, 착수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“갑”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- ① 기술용역 예정공정표
 - ②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
 - ③ 기타 “갑” 이 지정한 사항